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	
	2021년 4월 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월 31일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
배포일시	2021. 3. 31.(수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5270)	담당자	최재영 사무관(044-203-5272)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4월 1일 시행

- 전통신장,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**전기설비 안전등급제(5등급)** 도입
- **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**은 영업개시 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
- **노후(25년 이상) 아파트** 등에 대한 **3년주기 정기점검제도** 신설
-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**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** 가능
- **원격감시·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**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(1MW → 3MW) 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는 작년 3월(20.3.31) 공포된 「전기안전관리법」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「전기안전관리법」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「전기사업법」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·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,
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,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

①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

- (기본계획 수립 등)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**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***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* (내용) 전기안전 증장기 정책, 제도개선, 교육·홍보, 안전서비스 지원 등

- 1 -

- 그리고,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,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**전기안전자문기구***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·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.

* (구성)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·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

- (안전등급제 도입)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,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**전기설비 안전등급제***(5등급, A~E)가 도입되었다.

* (대상) 전통신장, 다중이용시설(숙박시설, 유치원 등), 구역전기사업자 설비
 ** (절차) 안전점검 → 등급통보 → 설비개선(소유자) → 변경신청 → 변경등급 통보

- 이에 따라, 점검결과 우수등급(A)은 **검사·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**(점검주기 1년 연장)가 제공되고,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**안전등급 변경**이 가능하다.

- (정보시스템 구축)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**‘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’**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이를 통해, 개별·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,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**국민에게 공개**할 예정이다.
 - * 전기설비 검사·점검 결과, 전기안전관리자 선·해임 현황,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

②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

- (안전점검 확대) **노후(25년 이상) 아파트 등 공동주택**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,
 - **농어촌 민박시설·전기차 충전시설**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(또는 운영자 변경 시)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
 - 또한, **신재생발전설비**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, **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**되었다.

- 2 -

<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(시행규칙 제6조, 별표 3) >

대 상	기 존	변 경
해양에너지	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	▶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태양광발전소	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	▶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연료전지발전소	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	▶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▶ 용접부에 대한 검사(비파괴, 내압 등)를 할 수 있는 상태 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전기저장장치	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	▶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▶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
- (긴급 안전조치)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**긴급점검을 실시**할 수 있으며,
 -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**개수·철거·이전 또는 공사중지, 사용정지**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*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손실 보상

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·업무여건 개선


- (전문성 제고)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(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)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**등록요건*을 갖추어야 하며**,
 - * (자본금) 2억원 이상, (인력) 전기기사 등 총 10명, (장비) 공용장비 등 총 27대
 - 또한, **시공관리책임자**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**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** 받아야 한다.
- (업무여건 개선) 대행사업자는 **원격감시 및 제어기능**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**3,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** 되었고,

- 3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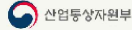
-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**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***이 마련되었다.
 - *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
- 또한,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**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**할 수 있고, 소유자는 이로 인한 **불이익 처우(안전 관리자 해임, 보수지급 거부 등)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**되었다.

-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을 통해 더욱 **충충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,
 - 기본계획 수립 등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시행에 **필요한 제반사항도**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,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**지속적으로 제도적·정책적 개선 노력**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.

【붙임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제도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(☎044-203-52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2021년 4월 1일

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



“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 확립”

1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

01 기본계획 수립



5년 단위로 수립, 자유기구 운영
 •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, 제도개선, 교육·홍보, 안전서비스 지원 등

02 안전등급제 도입



전동시진
 구의전기사업자
 다중이용시설
 •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형 관리(5등급)
 • 우수(A) 등급은 점검주기 1년 연장

03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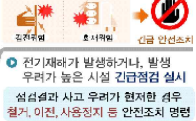
개별·통신 운영 중인 전기안전정보 통합 관리
 • 전기설비 검사결과, 전기안전관리자 선·해임 현황, 전기재해 통계자료 등

2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

01 안전점검 대상 확대·강화



02 긴급안전조치 제도 시행



3 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·업무여건 개선

01 종사자 전문성 제고



02 종사자 업무여건 개선

